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2015. 2. .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외 9명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2.

발 의 자 : 양진오, 강승수, 권기만
김근아, 김복자, 김태근
박세진, 안주찬, 정하영
허 복(10명)

1. 제안이유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안 제4조제2항제1호~8호, 제7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1”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2”를 “3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1”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1”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2”를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학부모회장 1”을 “학부모대표 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1”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1명----- ----- ----- -----
1. 부시장 1, 담당국장 1 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3. 경상북도의회교육의원 1 4.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1 5. 구미지구 현장 장학협의회장 1 6. 교육전문가 2 7. 구미시 학부모회장 1	1. --- 1명, ---- 1명 2. ----- 3명 3. 삭 제 4. ----- 1명 5. ----- 1명 6. ----- 1명 7. --- 학부모 대표 2명 8. ----- 1명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③ ~ ⑥ (생 략)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1명----- ----- ----- -----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 미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 다.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